계약번호 제22-02-02 호

송원학원 ERP 교재 수납 개발에 대한 계약서

계약체결일 : 2022년 02월 21일

**[본 문서는 갑의 대외비 서류입니다.]**

**㈜송원학원(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주)마이웹앱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송원학원 ERP 교재 수납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 약 개 요 : 송원학원 ERP 교재 수납 개발

2. 계 약 금 액 : **삼백오십만원** ( \ 3,500,000 ) VAT별도

3. 계 약 기 간 : 송원학원 ERP 교재 수납 개발은 본 계약서의 계약 체결일로 또는 “갑”의 이행명령 시점부터 21일간으로 한다.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쌍방 기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  |
| --- | --- | --- | --- |
| **[갑]** 관리자 제작 발주자 | | **[을]** 관리자 제작 개발자 | |
| 회 사 명 : | 송원학원 | 회 사 명 : | 마이웹앱 |
| 주 소 : |  | 주 소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58길 35 |
| 대 표 자 : | (인) | 대 표 자 : | 남 경 우(인)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교재 수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웹사이트 제작 전문 회사인 을에게 위탁한 송원학원 ERP 교재 수납 개발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조건 및 수행계획서, 개발범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교재 수납 프로그램 개발"** 라 함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제작물 송원학원 ERP 교재 수납 개발을 말한다.   
 **"용역"**이라 함은 송원학원 ERP 교재 수납 개발을 위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할 관리자 제작, 그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총칭한다.

**"약정기간"**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일 또는 갑의 이행명령 시점부터 **21일간의** 기간을 말하며 계약 체결일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출물"**이라 함은 약정기간 내에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공한 용역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교재 수납 프로그램 개발**의 약정기간은 **2022년 02월 21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은 동 서면합의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연장 또는 축소되며, 본 계약조건은 새로 규정된 기간까지 유효하게 된다.

**제4조 (용역의 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견적서에 명시된 **교재 수납 프로그램 개발**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로 한다.

**제5조 (산출물의 범위)**

을이 갑에게 약정기간 동안 **교재 수납 프로그램 개발**에 설치할 산출물의 범위는 관리자사이트의 디자인 및 PSD 등의 개발소스를 포함한다. 단, 개발소스는 최종결제 완료 후 인계한다.

**제6조 (산출물의 변경)**

갑과 을은 용역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출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사전 합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용역의 수행방법)**

을은 용역의 착수 이전에 갑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갑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의 연장 및 추가비용 부담)**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7일전까지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용역의 대가)**

1. 갑은 용역의 대가로 을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여진 대금을 지급한다.

a. 계 약 금 : 계약 후 7일 이내 총 계약금액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b. 잔 금 : 전체 제작 및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잔금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을은 갑에게 용역의 대가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 (산출물의 소유)**

갑은 을이 웹사이트 디자인 및 소스를 제작한 이후부터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물에 대한 전반적인 즉, 저작물의 복사, 변경, 삭제, 수정 등을 포함하여 일절의 권리를 갖게 되며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갑이 을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 지불이 계약조건에 따라 완료되지 못한 때에는 산출물의 소유권은 을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종업원 및 고용원))**

1) “을”이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2) “을”은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체결 이전, 계약체결 이후 혹은 계약 의무가 완결된 이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계약 당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위반 시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책임진다.

**제15조 (중간 산출물에 대한 의무)**

을은 갑의 만족스러운 디자인 제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관리자 제작과 관련하여 중간 산출물에 대한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중간협의를 통한다.

중간협의의 진행과정에서 상호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자료제공)**

갑은 을의 원활한 관리자 제작을 위하여 을이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차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본 계약의 무상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기간은 **교재 수납 프로그램 개발 및 검수 완료 후 30일로 한다.**

유지보수는 관리자의 유지관리 및 보수작업, 하자보수는 관리자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작기간이 지연되었을 경우, 제3조에 기입된 유지보수 기간이 아닌 제작 및 검수 완료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하자보수 기간 완료 후에도 을이 제작한 산출물에서 하자가 발견될 시, 을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용역의 중지)**

1. 을은 제9조에 규정한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있다.

2. 본 조 1항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수행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을 전체 용역의 수행기간

에 산입하지 않으며, 제3조의 계약기간 및 제14조의 하자보수는 중지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제19조 (갑의 계약해지)**

1. 갑은 을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본 조 1항에 의거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이 이에 대한 적정한 회답이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 (을의 계약해지)**

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갑으로부터 특별한 해명 없이 지급 받지 못하였을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고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급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해지의 효과)**

1. 갑과 을 상호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다만,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한 경우는 합의한 연장기간 이후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갖는다.

2. 계약이 해지 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즉시 그 이후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미 발생한 갑과 을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설비, 장비, 자료와 스스로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도면 및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디스켓 등 일절의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갑은 계약 해지 일까지 발생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을에게 **[{(총계약금액÷계약기간**(일)**)×0.9}×용역수행일 ]**로 계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5.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설비, 장비, 자료와 스스로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도면 및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디스켓 등 일절의 자료를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을의 대체수단을 찾아야 한다.

*을은 계약 해지 일까지 발생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갑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 (제작, 설치의 지연)**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재 수납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 갑은 이에 소요되는 을의 추가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재 수납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 을은 이로 인한 갑의 비용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9조 1항 용역의 대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3. 본 조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교재 수납 프로그램 개발을 약정기간 내에 완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하여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 (계약의무의 불이행)**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계약의무의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갑의 계약의무 불이행:

a. 제9조 1항에 명시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b. 제8조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c. 제18조 4항에 입각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d. 컨텐츠 제공 및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을이 막심하여 용역을 진행할 수 없을 때

2. 을의 계약의무 불이행:

a. 제9조 2항에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b. 제12조에 입각하여 을이 갑의 만족스러운 **교재 수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c. 약정기간 내 을이 **교재 수납 프로그램 개발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24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4항과 5항 및 제19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의 통합성)**

본 계약서, 계약조건 및 계획서는 갑과 을 당사자간의 **교재 수납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하나의 완전한 합의서이다.** 본 합의서는 갑과 을 사이에 오간 이전의 모든 협의사항을 문서화 한 것이며, 본 합의서와 상충되는 어떠한 종전의 협의 또는 합의사항도 본 합의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26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본 계약조건의 변경은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27조 (권리의 포기)**

본 계약조건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의 기명 날인한 서면의 포기 각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가 포기 또는 해제되지 아니한다.

**제28조 (조문의 해석)**

1. 본 계약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원활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

에 입각하여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계약관례에 따른다.

**제29조 (기타사항)**

1. 갑과 을은 **교재 수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